올림픽파크 **포레온**

일반공급 청약 안내문

FOREON
OLYMPIC PARK

■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

구 분	입주자모집공고	일반공급 청약	당첨자 발표	서류제출	계약기간
일정	2022.11.25(금)	1순위 해당 : 2022.12.06(화) 1순위 기타 : 2022.12.07(수)	2022.12.15(목)	2022.12.17(토) ~ 2022.12.31(토)	2023.01.03(화) ~ 2023.01.17(화)
방법	올림픽파크 포레온 홈페이지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인터넷 청약(09:00~17:30) (PC 및 스마트폰 앱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개별조회 (로그인 후 개별조회)	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(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-1번지)	

■ 유형별 ·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(85㎡ 이하)

구 분	29A	39A	49A	59A	59B	59C	59D	59E	84A	84B	84C	84D	84E	84F	84G	84H	계
일반공급	5	541	424	936	302	149	54	47	209	21	75	188	563	47	19	115	3,695

* 상기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1순위</td><td rowspan="2">신청자격</td><td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
-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성년자
-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 한 자
-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(1주택 소유시 가점제 불가)
-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은자</td></tr>
<tr><td>※ 지역별 · 면적별 청약 기준금액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특별시 및 부산광역시</th><th>그 밖의 광역시</th><th>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</th></tr>
<tr><td>전용면적 85㎡ 이하</td><td>300만원</td><td>25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/tr>
<tr><td>전용면적 102㎡ 이하</td><td>6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
<tr><td>전용면적 135㎡ 이하</td><td>1,000만원</td><td>7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/tr>
<tr><td>모든면적</td><td>1,500만원</td><td>1,000만원</td><td>500만원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</td><td>당첨자
선정기준</td><td>- 1순위 경쟁 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
- 전용면적 85㎡ 이하 : 가점제 100% 우선</td></tr>
<tr><td>2순위</td><td>신청자격</td><td>-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(경기도, 인천광역시) 거주 / 청약통장 가입자(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무관) / 주택소유 무관 / 세대구성원 모두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하지 않은 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예비당첨자 선정</td><td>-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%를 예비당첨자로 선정
-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/ 지역 내 가점순으로 선정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유의사항</td><td>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
- 당첨 시 당첨자로 관리되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'투기과열지구 내 공급주택'으로서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
- 부적격 당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 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 동안 청약 제한</td></tr>
</table>

올림픽파크 **포레온**

일반공급 청약 안내문

FOREON
OLYMPIC PARK

■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기간	32	만 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■ 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■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 ■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※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■ 주민등록표등·초본 ■ 가족관계증명서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■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(1) 만 18세 이상 ~ 만 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(2) 만 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■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)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

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

※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.
※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6호에 의거 무주택 세대원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(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)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.